

촉법소년들과 청소년들 이대로 괜찮을까?(임시제목)

우리는 요즘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과 이 법률의 연령하향**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촉법소년이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촉법소년법을 비판하고 개선 해야한다는 입장으로써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서 자료들을 통해 근거를 토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 통계로 알아보는 촉법소년 범죄건수 (근거 1)

분류별로 소년부 송치 촉법소년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천551명에서 2019년 8천615명으로 그 퍼센트가 **31.5%나 늘었습니다**. 강력범죄로 본다면 지난 2017년 6천286건이었던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2021년에는 8천474건으로 증가했다. 라는 경찰청 통계자료가 있고,

대표적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차량 절도 사건으로 일당을 검거했지만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이었고 처벌도 하지못했다고 하며 또 다른 차량 절도 건으로 다시 잡았지만 이들의 입에서는 "**촉법소년인데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범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두려움 없이 범죄 행각을 이어온 겁니다.

2. 거론되는 사회문제에 움직이는 정치인들 (근거2)

물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안 개정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촉법소년 개정을 요구하는 청소년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이종배 의원도 뜻을 모았다.

국민의 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서영교 의원, 김희재의원 또한 법안 발의를 했다. 얼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적도 있고, 이에 반대입장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교육과 청소년 단체는 “인권 침해, 범죄자 낙인, 교화 효과를 이유와 어린나이에 여럿이 모여서 수감생활을 할 경우 더욱 위험성이 커진다는 주장으로 대립하고있는 상황이다.

출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회에 이미 의원 법안 줄줄이 대기 2022-06-11 최재서기자 20221125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1032700004>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만13세로 하향, 인권위 반대" 2022-10-27 전주강씨 강진원 20221125접속 <https://blog.naver.com/kjw5310k/222911680259>

해마다 증가하는 촉법소년…대책은? [터치 핫이슈] 2021.05.06 박성욱 앵커

20221125접속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24631

촉법소년 연령하향 온국민소통 2021-06-25 제안자 홍미숙 20221125접속

https://www.onsotong.go.kr/front/propseTalk/propseTalkViewPage.do?propse_id=2f8c38a13752409bb83944cdae0d1462

[네이버 지식백과] 촉법소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21125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5556&cid=43667&categoryId=43667>

7

가능한 반론

전문가의 의견..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8/04/AM75SWJVF5DTXA2CH76QOXYFBA/

조선일보 2022.08.04. 채민석기자 20221126열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10대때 전과가 누적 되면 자포자기형 범죄자 증가
“촉법소년 연령을 강행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더 많은 저연령 전과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10대 때 범죄 전과가 누적되면 ‘될대로 돼라’는 식의 자포자기형 청소년 범죄자가 늘어나 사회의 교화나 선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지만 여기에 대하여 결국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지금의 상황은 그에 맞는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범죄수준을 뛰어넘지만 어찌보면 방관하고 있다는 말로 다르게 들리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청소년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범죄는 늘어나고 질은 더 나빠졌다”라는 말이 더욱 공감되었다.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연령하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고려해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노동연령이나 혼인연령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연령만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교화와 교화가 안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회와 분리시키는 더 명확한 법률과 기존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정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 범죄가 일어나는 장소나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여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결과적인 처벌과 법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만 그전에 범죄의 강도와 사건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흐름과 주거, 공동생활, 범죄 노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범죄의 원인을 찾아서 줄여나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또한 범죄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 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들도 많고 실제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하고 사건을 무마 시킨 일도 있기에 지금의 현실로는 제약이 많은게 현실이라고 본다. 또한 반대입장에서 주장하였던 교화시설 확충과 청소년 전문 판사도 연령 하향 이후에 확충 해야할 것이다.

